

2023년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 상세 안내

[전시활성화지원]

1.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

- 조성 4년차 이상의 작은미술관과 다양한 공공지원사업을 통해 조성된 전시 공간 중 자체 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이 저조한 전시공간을 지원하여 콘텐츠 중심 미술관 운영 활성화
- 조성 4년차 이상의 작은미술관 또는 이미 조성·운영되고 있는 공공 전시공간을 대상으로하며 단년도 지원사업인 만큼 최소 2개 이상으로 요구되는 기획 전시 및 프로그램의 수월성, 공공성, 대내외 파급력 선정시 고려
- 공간 안전 관리 계획 선정시 고려
- 작은미술관의 확장성과 지역균형관점에서 문화취약지역 및 미선정지역(광역시권) 우선 고려

2. 지원대상지역(공간)

- 2015년~2020년 작은미술관을 조성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한 지역
- 지역 문화원, 지역 문예회관, 지역 공공도서관, 생활문화센터 전시실을 보유·운영 중인 지역
- 중앙부처, 지자체, 공공기관이 조성하여 보유하고 있는 전시실을 운영 중인 지역

3. 지원신청자격

- 2015년~2020년 동 사업을 통해 기 조성된 작은미술관을 보유·운영하는 지자체 혹은 공공기관과 협약(공간협조 및 예산 등 위탁운영 관련)을 체결한 단체
 - 지역 문화원, 지역 문예회관, 지역 공공도서관, 생활문화센터가 보유·운영 중인 전시실을 작은미술관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
 - 중앙부처, 지자체(광역시, 기초 자치단체), 공공기관(2023년 기획재정부 지정 347개 공공기관 및 수협, 농협, 축협 중앙회 포함)이 보유·운영 중인 전시실을 작은미술관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해당 협력기관과 협약(공간협조 및 예산 등 위탁운영 관련)을 체결한 단체
- ※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단체
- ※ 공공기관 위탁, 민간위탁 등 지자체 직영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운영 주체 지원신청 가능. 단, 민간 경상보조금 수령이 가능한 운영주체여야 함(지역문화재단,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, 사회적기업, 소셜벤처, 협동조합 등)

4. 사업기간

- 2023년 4월 ~ 2023년 12월

5. 지원금액

- 1개소당 최대 4천만원(민간경상보조)
- 지원금액은 예산 범위 안에서 조정될 수 있음

6. 예산편성 가능 항목

- 작은미술관의 전시 및 부대 프로그램 구현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
 - (지원예산의 최대 30%까지) 전시 프로그램 기획, 운영 및 공간 관리를 위한 인건비(기획자 인건비, 도슨트 사례비 등)
 - (지원예산의 70% 이상) 전시 콘텐츠 발굴, 유지, 개최와 교육, 아카이브 등 부대프로그램 추진, 홍보 등을 위한 비용(참가비 및 사례비, 재료비 등)

| 세목 | | 항목 | 비고 |
|-----------|-------|--|---|
| 인건비 | 기타직보수 | - 사업추진에 직접 관련된 전담인력 인건비 (기획자, 행정인력 등) | 총사업비 30% 내 책정 가능 |
| | 일용임금 | - 사업보조 단기인력 임금 | |
| 일반수용비 | | - 참여비(아티스트피) 및 사례비(기획자, 비평가, 작가, 테크니션, 해설사(도슨트) 등) - 재료비, 제작비, 설치비, 홍보비, 출판인쇄비, 운송비, 회계검사 수수료, 영유아 돌봄비, 배리어프리 환경조성 등 - 예술인고용보험료(사업자부담금), 상해 또는 산재 보험료 등 각종 보험료 | 창작자 권리보호를 위한 참여비(아티스트피) 지급 및 서면계약서 체결 의무 회계검증 수수료 필수편성 참여자 전원 상해 또는 산재보험 가입, 예술인고용보험 가입(직장부담금 예산 책정 가능) |
| 임차료 | | - 장비, 물품 등의 임차비, 대관료 | - |
| 공공요금 및 제세 | | - 우편요금 | |
| 국내여비 | | - 사업 추진관련 교통비 및 숙박비 | 실비 증빙가능 항목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, 국외여비는 국내 사업진행에 필수적인 경우에만 인정 |
| 국외여비 | | | |
| 사업추진비 | | - 사업 추진관련 회의진행비, 간담회비 | 회의진행비 1인당 5천원 미만, 간담회비 1인당 2만원 미만 |

※ 시설 개보수, 자산취득비, 단체 운영비 및 포괄적 예산(예비비 등) 책정 불가

7. 예산편성 불가 항목

- 공간 개보수, 자산취득비, 시설 관리 및 단체 운영비, 포괄적 예산(예비비)
 - ※ 위 항목은 자체 예산 활용

8. 심의절차

- ① 서류심의 : 지원신청서(사업계획, 공간설명서, 공간 및 예산 협조 등 협력기관 협력증빙서) 검토
- ② (필요시)현장실사 : 서류심의를 통과 대상(최종 선정 예정 건수의 1.5배 이내) 필요시 현장실사
- ③ PT 및 인터뷰 심의 : 최종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

9. 심의기준

- ① 이전년도 작은미술관 운영 단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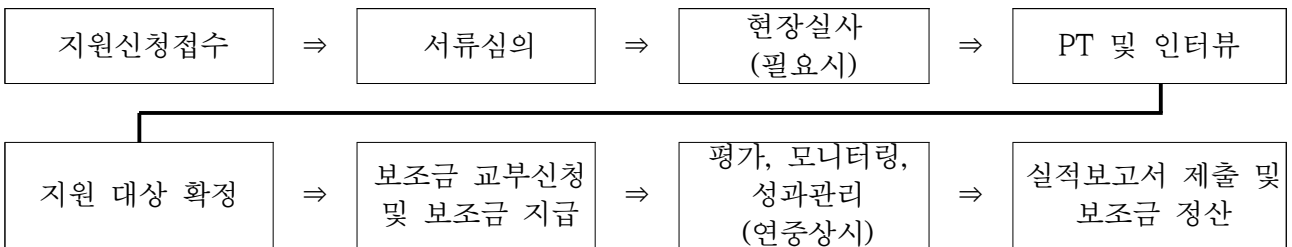
| 심의기준 | 세부평가내용 |
|------------------|---|
| 이전년도 사업 실적 (30%) | - 이전년도 전시 및 부대 프로그램 운영 내용 및 실적 - 이전년도 사업 운영 결과의 지역문화적 파급효과 |

| 심의기준 | 세부평가내용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공간의 적합성 (35%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작은미술관 사업추진 방향성과 사업 목표의 일치 여부 - 예산, 추진일정 등 효율성과 예산 매칭 등 실현가능성 - 다중공공시설로의 공간 적합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안전성(화재보험 가입 여부, 안전관리 계획 등) · 개방성, 활용여건, 규모 및 입지 등 |
|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효과성 (35%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차별화된 프로그램 기획, 운영 방안 - 주요 운영/기획 인력의 경력 부합성 - 사업추진 파급효과 - 사업의 지속가능성(중장기 로드맵, 지자체 추진의지 등) - 지원 종료 후 자생적인 운영 가능 여부 |

② 지역 문화원, 문예회관, 공공도서관, 중앙부처, 지자체, 공공기관 전시실 운영 단체

| 심의기준 | 세부평가내용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공간의 적합성 (35%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작은미술관 사업추진 방향성과 사업 목표의 일치 여부 - 예산, 추진일정 등 효율성과 예산 매칭 등 실현가능성 - 다중공공시설로의 공간 적합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안전성(화재보험 가입 여부, 안전관리 계획 등) · 개방성, 활용여건, 규모 및 입지 등 |
|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효과성 (35%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차별화된 프로그램 기획, 운영 방안 - 사업추진 파급효과 - 사업의 지속가능성(중장기 로드맵, 지자체 추진의지 등) - 지원 종료 후 자생적인 운영 가능 여부 |
| 수행단체의 경력부합성 (30%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유사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실적 - 주요 운영/기획 인력의 경력 부합성 |

10. 사업추진절차



11. 제출서류 및 내용

| 제출자료 | 구분 | 제출방법 |
|---------|----|---|
| ①지원신청서 | 필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계획, 공간설명서, 공간 및 예산 협조 등 협력기관 협력 증빙서,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본문 포함 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'첨부파일' 면에 첨부 |
| ②기타참고자료 | 선택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단계에서 '첨부파일' 면에 첨부 |

※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
단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, 공간 협력 증빙서 등 붙임자료는 3차 발표심사 전까지 제출 가능

12. 지원불가대상

- ① 민간(개인) 소유 공간 및 임시 가설 공간
- ② 지원신청 시점에서 지원대상 공간이 공공 소유가 아닌 경우
예) 현재는 민간소유이나 공모 선정 시 지자체에서 매입 예정 등은 지원불가

13. 선정단체 의무사항

- 사업추진 시 작은미술관으로 운영할 전시실의 명칭에 ‘작은미술관’ 을 반드시 병기해야함
예) ○○문예회관 제1전시실 → ○○문예회관 작은미술관
- 지원 신청 시 혹은 사업추진 과정에 전문 기획자를 포함해야 함
(단체 내부에 전문기획인력이 있는 경우는 해당 인력 활용 가능, 없는 경우 외부 전문 기획자 포함 필수)
- 전시 공간 조성(개보수 포함) 및 시설 운영비 예산은 지원신청단체, 협력 지자체 또는 협력 공공기관의 자체 예산 활용
- 개관 이후 최소 2회 이상의 전시를 포함하여 사업기간 동안 전시장 가동률 50%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
※ 전시장 가동률 : $\frac{\text{전시장가동일}}{\text{사업기간일}} \times 100$
= $\frac{\text{전시일} + \text{기타행사일}}{\text{사업기간일}} \times 100$
= $\frac{\text{사업기간일} - (\text{휴관일} + \text{정비·점검일})}{\text{사업기간일}} \times 100$
- 사업기간 동안 단순 대관전 개최 사양
- 예술인 권리 및 저작권 보호, 표절금지, 고용보험, 사업 수행 안전 확보, 성희롱 성폭력 예방 등 사업수행단체(참여자) 책임준수
- 향후 공공공간 사용 불가 등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 취소 가능
- 1, 2차 분할교부 및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중간점검(중간실적보고서 제출 등) 진행 후 2차 교부 예정

14. 문의처

-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부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 담당자(061-900-2342, 2346)
- 담당자 응대 가능시간 : 10:00~17:00